

2025년 장기요양 수가변경 안내문

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▶ 보건복지부 고시 제 (2024.10.31.)

※ 보건복지부 고시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5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※ 인력배치 기준 개정 관련근거:「노인복지법 시행규칙」

별표4 '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(제22조제1항 관련)'

1) 노인요양 시설 1일당 본인부담금

(단위 : 원)

등급	2024년 수가(2.5:1)	2024년 본인부담금	2025년 수가(2.3:1)	2025년 본인부담금
1등급	80,630	16,120	86,030	17,200
2등급	74,810	14,960	79,810	15,960
3,4,5등급	68,990	13,790	75,360	15,070

2) 2025년 1월1일 기준 식재료비

(단위 : 원)

등급	2024년	2025년
1식당	2,500	2,700

3) 본인부담금 변경에 따른 본인부담금 계약사항

(단위 : 원)

급여비용 안내 (*30.5일 기준*)									
분류	인력 배치 기준	장기요양급여비용				비급여항목	본인부담금(비급여항목 포함)		
		총급여액	본인부담금			식사재료비 (간식비포함)	일반 (20%)	감경 (12%)	감경 (8%)
			일반 20%	감경 12%	감경 8%				
1 등급	2.3:1	2,623,610	524,722	314,833	209,889	247,050	771,770	561,880	456,930
2 등급	2.3:1	2,433,900	486,780	292,068	194,712	247,050	733,830	539,110	441,760
3,4,5 등급	2.3:1	2,298,480	459,696	275,818	183,878	247,050	706,740	522,860	430,920

보건복지부 정책으로 장기요양보험수가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평균상향(3.93%)

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수가 인상으로 인해 본인부담금 인상이 불가피함을 알려드리며,

2025년 01월 분부터 본인부담금 급여 수가가 변동되어 적용됩니다.

2024년 12월 10일

전남성노원장 (관인생략)